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5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54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530172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J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담당변호사 안광휘

변론 종결 2021. 6. 23.

판결 선고 2021. 7. 14.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5301725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당심에서 원고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7. 7. 17. 제1심 공동피고 A과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20. 7. 17.까지로 정하여, A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채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A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그 대위변제금과 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9. 5. 31. H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9. 9.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H에 28,426,3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제1심에서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3. 18. "A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9,433,602원과 그중 28,426,39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A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이 사건과 분리, 확정되었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A은 2019. 4. 3. 피고에게 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인 D 잡종지 1,140㎡² 중 북서쪽 570㎡² 및 ②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259.37㎡ 중 업무용(카센터) 1동 180㎡² 전부에 관하여, 2017. 4.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70,000,000원, 존속기간 2017. 4. 15.부터 2022. 4. 15.까지로 정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 1) 이 사건 부동산 및 A 소유 안성시 L 주유소용지 930㎡² 및 그 지상 2층 주유소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들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7. 5. 22. M조합(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채권최고액 98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M의 신청에 따라 2019. 7. 4.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
-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은 2020. 5. 20. N, O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 3)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2020. 6. 25.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21,993,4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 1)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20. 3. 18.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2)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당심에서 소송 진행 중인 2021. 1. 20. A은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하단2254),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2)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 이루어진 일자, 그 무렵 A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규모,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이전부터 A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A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은 그러한 인식을 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전세권설정계약일은 2017. 4. 15.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은 등기 당시인 2019. 4. 3.에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와 2011. 3. 2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만 첨부되어 있고, 피고는 다른 임대차계약서 또는 2017. 4. 15.경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2017. 4. 15.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서도 그때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등기를 마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게 늦게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찾기 어렵다. ③ 이에 관해 A은 진술서를 통하여 "자신이 어려워서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가 찾아와서 전세권설정을 요청해서 등기 당시에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전세권설정 당시 A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뿐이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88,000,000원의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리고 위 각 부동산은 전세권설정 후 불과 약 3달이 지난 2019. 7. 4.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약 15억 원(최초 매각기일 당시 최저매각가 1,501,360,350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위 각 부동산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담보가치는 약 5억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당시 A에게 그 밖의 다른 재산은 소액의 예금 채권(파산신청일 2020. 8. 5. 기준 약 3,750,000원)과 자동차(파산신청일 기준 약 1,700,000원)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A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H, P(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상호도 간략히 기재한다. 이하 같다), Q조합, R, S, T, U 등 여러 금융기관 및 거래 관련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세권설정등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8. 9.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148,573,204원의 구상금채무, V의 T, W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138,943,892원의 구상금채무 등까지 합해 총 약 7여억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었다. 이러한 채무로 인해 T, V, 신용보증기금, M, X 등 여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9. 5. 9.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에 관해 여러 건의 가압류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은 약 9억 원(배당할 금액 910,291,786원)에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M과 교부권자인 안성시, 평택세무서는 100% 배당을 받았으나, 그 외에는 피고만이 채권액 중 31.42%에 해당하는 21,993,412원을 배당받았고,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5) 한편 A의 파산신청 당시 진술에 의하면, A은 1993년부터 별건 부동산에서 Y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8년 이후 판매량이 크게 줄고 어려워져서 보증보험, 거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대출이 안 되어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까지 이용하여 돈을 대출받아 경영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2019. 4. 30. 폐업하였다면서 지급이 불능으로 된 시점이 2019. 4. 30.이라는 것이다. 또한 A은 경매 전 시가보다 싸게 주유소를 매수한다는 지인이 있어서 M과 협의하였으나 결국 매각하지 못하여 경매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A은 이미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곧 진행될 경매절차에서 피고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관해 피고는, 피고가 2011. 4. 1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Z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전문수리업을 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이후에도 A에게 월세, 유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등 A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A의 채무관계 등 사정을 알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이나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2011. 4. 18.경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시까지 8년 가까이 장기간 A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Z'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 등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별건 부동산에서 그와 관련 있는 'Y주유소' 영업을 하는 A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이 어려워서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가 찾아와서 전세권설정을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는 실제 2019. 4. 9.에야 이 사건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설정계약일을 2017. 4. 15.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하였다. 또한 피고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더라도 그 보증금은 55,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A이 파산신청 당시 밝힌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가 55,000,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에 기재된 전세금도 55,000,000원이다), 이 사건 전세권은 전세금 액수도 70,000,000원으로 액수를 부풀려서 등기하였다. 이는 A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알고 이후의 경매절차 등에서 유리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 후 A에게 지급했다는 월세는 2019. 4. 16. 880,000원 한 번에 불과하고, 지급했다는 주유대금도 2019. 4. 18. 한 번 150,000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A의 사해행위가 부존재한다거나 A의 무자력 증명이 안 되었다는 주장은, 부인의 소로 청구가 변경되기 전의 사해행위를 전제로 한 주장이고, 이를 부인의 소를 전제로 한 주장으로 선행하여 이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전세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에서 2020. 6. 25. 피고가 21,993,41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이 부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1,993,412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규연

판사최태영

판사심재남

별지